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7일,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 의원)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IMF 구제금융 극복 및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각 부처별로 ‘신지식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신지식인 선발 및 운영업무는 2003년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동 업무를 각 부처로 이관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포상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

2025년 현재 정부 부처 차원에서 신지식인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해양수산부(수산신지식인) 및 농식품부(신지식농업인)의 두 곳이며, 그 밖의 신지식인 선정은 한국신지식인협회 등 민간 영역에서 이

루어지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자를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하여 수산인력 양성 및 어촌 발전에 기여토록 지원해 왔으며, 199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5명씩 총 250명의 수산신지식인을 선발하였음¹⁾.

그런데 이러한 신지식인 선정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예산확보, 정책 연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수산신지식인 선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지식인의 선정·육성 및 지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해양수산부 수산 신지식인 주요 선정사례

- | | |
|----------------|--|
| ○ 이OO(‘21, 경남) | 국내산 캐비아 생산 기반마련 및 유통·가공, 판매 확대 |
| ○ 김OO(‘22, 전남) | 법성포 재래식 전통 굴비 제조공정을 복원하여 표준화하는 등 전통식품 계승 및 현대화 선도 |
| ○ 최OO(‘23, 경기) | 저염 지하 암반수를 활용한 질소화합물, 유해조류 처리로 새우양식을 통해 유병률 감소 |
| ○ 이OO(‘24, 전남) | 양식 수산물의 주요 바이러스 3종의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10분 이내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 개발 |

자료: 해양수산부

1) 수산신지식인 제도의 개요 및 추진 경과는 [참고자료1] 참조

신지식인 제도는 학력이나 직업 등 지식인을 정의하던 전통적인 기준을 탈피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인재를 개발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수산 신지식인의 경우 지난 20년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기 사례와 같이 현장 성과가 축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수산 신지식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지식인’의 개념이 기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었거나 대중들에게 널리 인지될 만큼 보통명사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신지식인이 어떠한 사람을 뜻하는지 수범자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거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²⁾에서는 신지식인을 “농업, 어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 정의한 바 있음.

- 민간조직인 ‘한국신지식인협회’에서는 신지식인을 “다양한 정보를 습득·적용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그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사회적으로

2) 의안번호 제1907859호, 2013.11.20.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공유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음³⁾.

- 해양수산부의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은 ‘신지식수산업’을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수산신지식인’은 이러한 ‘신지식수산업을 하는 수산인 및 수산물 생산·저장·가공·유통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함⁴⁾.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현재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수산신지식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정책적 실효성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수산신지식인의 개념이 기존 법률이나 사회 일반에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문에 명시하여 의결함.

3) 한국신지식인협회 웹사이트: <http://www.sinzi.or.kr/> (최종검색일 2025.6.4.)

4)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지식수산업"이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말한다.

2. "수산신지식인"이란 제1호의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산인

나. 그 밖에 수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 및 어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분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신지식인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려는 것이나, ‘수산신지식인’의 개념이 기존 법률이나 사회 일반에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문에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
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
도하는 수산업활동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수산 신지식인의 육성) ①</u> <u>해양수산부장관은</u> <u>해양수산 분야의</u> <u>지식·기술 개발을</u> <u>통한 수산업·어촌</u> <u>의 변화와 혁신을</u> <u>도모하기 위하여</u> <u>수산 신지식인을</u> <u>육성하는 정책</u> <u>수립하고 시행하</u> <u>야 한다.</u> <u>② 해양수산부장관</u> <u>은 해양수산부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제1항에 따른</u> <u>수산 신지식인을</u> <u>선정하고 필요한</u>	<u>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u> <u>해양수산부장관은</u> <u>수산업 분야에서</u> <u>새로운 지식을 창</u> <u>조하여 유형·무형</u> <u>의 새로운 부가가</u> <u>치를 창출하고 이</u> <u>를 사회적으로 공</u> <u>유함으로써 수산</u> <u>업·어촌의 변화와</u> <u>혁신을 주도하는</u> <u>수산업활동을 하는</u> <u>자(이하 이 조에서</u> <u>“수산신지식인”이</u> <u>라 한다)를 육성하</u> <u>기 위한 정책</u> <u>수립하고 시행하여야</u>

	<u>지원을 할 수 있다.</u>	<u>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u> <u>수산신지식인의 선</u> <u>발·육성 및 지원</u> <u>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해양수산부령으</u> <u>로 정한다.</u>
--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u> 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